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신인	최** 님 귀하
주소	(03382)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4-*, ****호

양서농업협동조합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5년 09월 25일자로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양서농업협동조합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양수 예정인(농협자산관리회사)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서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양서농업협동조합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ysnh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05. 09. 08. 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☐

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원 / 원
자립예탁금	352-0823-7***-3	30,000,000	29,690,626	97,613	0	원
일반대출금	061-0805-3***-3	820,000,000	820,000,000	19,776,237	0	원
						원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양서농업협동조합(031-770-685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5 년 9 월 8 일

양도예정인 [발신인]	양서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2번길 8 조합장 최 성 호
----------------	---

